

정책분석과 동향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

Integrated Policy Support for Early Care Leavers Transitioning to Adulthood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연구위원

2023년 8월 「아동복지법」의 개정, 2024년 2월 시행을 통해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자립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여 만 18세 이전에 중간퇴소한 아동·청소년·청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마련된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및 지원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전히 남아 있는 자립지원의 사각지대와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사후관리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연령 기준 완화 및 원가정 복귀 아동 지원, 부처 간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사후관리 체계화, 아동보호전담요원 확충 방안을 제시하였다.

1 들어가며¹⁾

원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원과 지지, 사회경제적 자원이 부족하여 공적 체계의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은 발굴 또는 발견 경로에 따라 각

각 보건복지부 관할의 아동보호체계(아동복지시설), 여성가족부 관할의 청소년보호체계(청소년복지시설), 법무부 관할의 소년보호체계(소년보호시설)로 분리된 공적 체계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 왔다. 그러나 ‘자립준비청년’은 보건복지부 관할 아동

1) 이 글은 이상정, 이주연, 주보혜, 김무현, 백혜정, 주하나. (2024).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통합적 자립지원 방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

보호체계에서 18세 이상의 연령이 되어 보호종료 또는 퇴소한 청년만을 지칭해 왔다. 이로 인해 18세 이전에 보호체계를 떠난 청년은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고, 자립 과정에서 경제, 주거, 학업 등과 관련하여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상정 외, 2024).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 2월 9일 개정·시행된 「아동복지법」은 자립지원 대상을 15세 이후에 보호를 종료하여 성인이 된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하였다(보건복지부, 2024). 15세 이후에 타 법상의 시설로 전원하여 18세 이상의 자립준비청년이 되는 경우 아동복지법상의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컨대 아동양육 시설에서 청소년쉼터나 자립생활관, 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타 법률상 시설로 전원되면서 「아동복지법」상 보호가 조기 종료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그동안 부모의 보호도, 국가의 제도적 지원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이중적 배제 상태에 놓여 있었으나 아동복지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사례관리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가가 자립지원의 정책 대상을 넓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소년 및 소년 보호체계를 포괄하여 정책 대상을 확대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 속에서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통합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가.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정의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의 개념과 범위를 확인하고자 한다. 「아동복지법」 제38조 4호는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을 “18세에 달하기 전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정부는 4가지의 자립지원 대상자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보건복지부, 2024). 첫째, 이른 나이에 아동보호체계로부터 과도한 조기 이탈 유도를 방지하고, 경제활동인구의 기준 연령이 15세임을 고려하여 ‘15세 이후’라는 연령 기준을 마련했다. 둘째,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 입소 또는 조기 취업·대학 진학 사유여야 한다. 원가정 복귀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셋째, 자립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18세 이후부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조기 취업·대학 진학 시에는 18세 이전에도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정법이 적용되는 2024년 2월 9일 이후 18세가 되는 청년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은 15세 이상

의 연령으로 아동복지법상의 시설,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뒤 타 법률상의 시설로 전원되어 18세의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다. 자립지원 대상자에 포함되는 다른 법률상의 시설은 「청소년복지법」의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보호소년법」의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방지법」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거주시설 등이다(보건복지부,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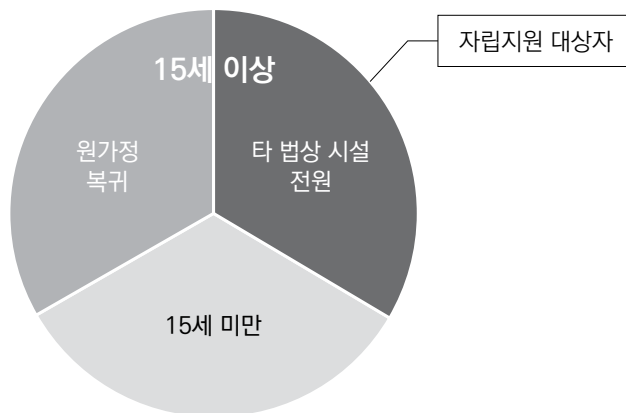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15세 미만의 연령은 배제되고, 15세 이상의 연령이어도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청소년은 자립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종료된 아동·청소년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매우 일부에 해당된다(그림 1).

나.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현황

현재까지 중간퇴소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실태 파악은 부족한 실정이다. 15세 이상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를 종료하여 타 법상의 시설에서 성인이 된 자립준비청년의 현황은 일부 자료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1a, 2021b, 2022)이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 보고서’에서 16세 이상 보호아동 중에서 중간보호종료로 퇴소한 아동의 현황을 밝히고 있다.

중간보호종료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362명, 2020년 567명, 2021년 243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16~18세의 가정 외 보호(아동양육 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아동은 4273명, 중

[그림 1] 중간퇴소 자립지원 대상자



주: 만 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중간퇴소 아동을 전체로 함.

자료: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통합적 자립지원 방안 연구”, 이상정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4.

[표 1] 보호 유형별 중간보호종료 현황(2019~2021)

(단위: 명, %)

연도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전체
2019	172(47.5)	76(21.0)	114(31.5)	362(100.0)
2020	180(31.7)	69(12.2)	318(56.1)	567(100.0)
2021	137(56.4)	70(28.8)	36(14.8)	243(100.0)

출처: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통합적 자립지원 방안 연구", 이상정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7.

간보호종료 아동은 약 5.7%로 파악되었다. 2019년의 경우 양육시설의 중간보호종료 아동이 17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탁가정 114명, 공동생활가정 76명 순이었다. 2020년에는 위탁가정의 중간보호종료 아동이 318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2021년에는 36명으로 급감하였다. 2021년에는 양육시설 보호종료 아동이 137명으로, 해당 연도 전체 중간보호종료 아동 수의 절반을 넘었다.

해당 보고서는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 한하여 중간보호종료 사유를 '원가정 복귀, 입양, 가정위탁, 친인척 인계, 취업, 무단퇴소, 사망, 군입대, 전원, 기타'로 구분하여 밝히고 있다. 최근 3년 모두 가장 많은 높은 비율을 차지한 중간보호종료 사유는 '원가정 복귀'로, 2019년에는 그 수가 128명으로 전체 중간보호종료 아동의 51.6%를 차지하였다. 2020년에는 100명(40.2%), 2021년에는

[표 2] 중간보호종료 사유별 아동 현황(2019~2021)

(단위: 명, %)

연도	표머리	원가정 복귀	입양	가정 위탁	친인척 인계	취업	무단 퇴소	사망	군입대	전원	기타
2019	248 (100.0)	128 (51.6)	0 (0.0)	3 (1.2)	7 (2.8)	1 (0.4)	0 (0.0)	0 (0.0)	1 (0.4)	89 (35.9)	19 (7.7)
2020	249 (100.0)	100 (40.2)	0 (0.0)	7 (2.8)	4(1.6)	2 (0.8)	0 (0.0)	2 (0.8)	0 (0.0)	95 (38.2)	39 (15.7)
2021	207 (100.0)	92 (44.4)	0 (0.0)	4 (1.9)	2 (1.0)	0 (0.0)	4 (1.9)	2 (1.0)	2 (1.0)	83 (40.1)	18 (8.7)

주: 가정위탁의 경우 시스템 입력 시 중간보호종료 사유에 대한 입력 항목이 없어 가정위탁을 제외하고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아동 현황만 집계되었음.

출처: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통합적 자립지원 방안 연구", 이상정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8.

92명(44.4%)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사유는 ‘전원’이었는데, 2019년 89명(35.9%), 2020년 95명(38.2%), 2021년 83명(40.1%)으로 3년 동안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 외에도 가정위탁, 친인척 인계, 사망 등의 사유가 있었다. 2021년에는 무단퇴소도 4명으로 집계되며 전체 중간보호종료 아동의 1.9%를 차지하였다.

가정위탁 아동의 경우 ‘가정위탁 현황 보고서’를 통해 가정위탁 일시 중지 현황이 별도로 발표되고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3a, 2023b). 해당 자료에서 가정위탁 일시 중지는 ‘1년 이내 단순 휴학, 군복무, 소년법 보호처분, 어학연수 등의

사유로 위탁보호를 일시 중지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보호 중에 일시 중지하는 경우와 보호 연장 중에 일시 중지하는 경우로 분류하고 있다. 15세 이상 보호아동이 포함될 수 있는 보호 중 일시 중지 현황을 보면 2020년도 27명, 2021년도 15명으로 모두 소년법 보호처분으로 인한 보호종료로 소년법상의 보호시설로 추정할 수 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38조 4호에 근거한 지침에 의하면(보건복지부, 2024), <표 2>와 <표 3>의 전원, 가정위탁, 소년법 보호처분의 사유를 제외한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동안 원가정 복귀나 전원으로 인해

[표 3] 가정위탁 일시 중지 사유별 현황(2020~2021)

(단위: 명, %)

구분		1년 이내 단순 휴학	군입대	소년법 보호처분	어학연수	기타	총계
2020년	보호 중 일시 중지	-	-	27 (100.0)	-	-	27 (100.0)
	연장 일시 중지	161 (43.9)	201 (54.8)	-	3 (0.8)	2 (0.5)	367 (100.0)
	계	161 (40.9)	201 (51.0)	27 (6.9)	3 (0.8)	2 (0.5)	394 (100.0)
2021년	보호 중 일시 중지	-	-	15 (100.0)	-	-	15 (100.0)
	연장 일시 중지	160 (47.8)	169 (50.4)	-	1 (0.3)	5 (1.5)	335 (100.0)
	계	160 (45.7)	169 (48.3)	15 (4.3)	1 (0.3)	5 (1.4)	350 (100.0)

주: 가정위탁 일시 중지 현황은 2020, 2021년도 현황 보고서에서만 집계되었음.

출처: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통합적 자립지원 방안 연구”, 이상정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1.

아동복지시설에서 중간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 자립지원에 대한 욕구와 실태에 대해서는 정책적 관심이 미비했다. 이 중 2023년 8월 「아동복지법」 제38조의 개정을 통해 18세 이전에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과 타 부처 시설로 전원되어 보호가 조기에 종료된 40% 정도의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되었지만, 중간퇴소 아동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원가정 복귀,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은 여전히 자립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 한편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외의 관련 현황은 없고, 15세 이하 아동의 원가정 복귀, 입양, 전원 등 중간퇴소 수 및 사유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현황 보고도 없어 중간퇴소 아동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중 성인이 되어 자립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또한 상당할 것으로 추측된다.

다.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 서비스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에 따르면 15세 이후 조기 종료된 아동·청소년의 경우 타 법상의 시설에 입소하여 18세가 도래하면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자립지원 서비스는 <표 4>와 같다. 자립준비청년은 경제, 심리·정서, 주거, 진학·취업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군구에 배치된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개별 아동·청소년이 15세 이상의 연령으로 타 법상의 시설로 전원한 경우 보호종료 후 최초 1주일 이내에는 전원 시설에 방문하여 사후관리를 해야 하고, 이를 포함하여 5년간 연 1회의 사후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단 해당 아동·청소년이 18세에 도래한 경우 5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사후관리를 종료할 수 있다. 사후관리 수행 방법은 연 1회 이상의 자립지원 계획 수립과 자립 수준(취업·진학 여부, 소득, 기초생활수급 여부, 건강상태 등)을 포함한다.

기본적으로 18세에 도달하면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조기 취업, 대학 조기 진학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여 18세 이전에 신청 및 지급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18세 이후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연계되어 필요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아동 분야 사업 안내에 따르면(보건복지부, 2024) 원가정 복귀나 타 시설 전원 등 정상적인 보호종료 절차를 거치지 않고 18세 이전에 시설을 이탈하여 1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아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최소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지역 내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아동의 이익을 위한 최상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4, p. 200).

[표 4] 주요 자립지원 서비스

구분	지원명	지원 내용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CDA)	보호 대상 아동의 자산 형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정부 적립금 지원 0~17세 보호 대상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 후원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 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자립준비청년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수급 자격 완화 보호종료 후 5년간 소득조사 시 사업·근로소득 공제(6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소득의 30% 추가 공제)
	자립수당	보호종료 후 5년간 본인 계좌로 자립수당(월 50만 원) 지급
	자립정착금	보호종료 시 일시금으로 자립정착금(지자체별 금액 상이) 지급 - 서울: 2000만 원 - 대전·경기·제주: 1500만 원 - 경남: 1200만 원 - 그 외 지역: 1000만 원
심리· 정서 지원	자조모임	자립준비청년으로 구성되어 보호아동 방문교육, 멘토링 등을 수행하는 자립멘토단·자조모 임 성격의 바람개비서포터스 운영 및 활동비 지원
	심리상담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우선 지원 대상에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포함하여 지원(본인 부담금 제외)
주거 지원	공공임대	LH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 자립준비청년에게 청년전세임대주택 전세 지원금을 만 22세까지 무이자 지원
	LH 유스타트 상담센터	자립준비청년 전용 LH 주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센터 운영
진학·취업 지원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II 유형 우선 지원 권장 대상 및 근로장학금 우선 선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 포함(자립준비청년은 선발 시 성적 기준 제외)
	대학특례	대학교 기회균형선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완료 (2022년 3월 개정, 24학년도부터 적용)
	고용기회 확대	국민취업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선 지원 등을 통한 자립준비청년 취업 역량 강화 및 훈련비 지원
전달체계 및 보호 기간 연장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 전담 기관	17개 시도 자립지원 전담 기관 운영(2022년~) 및 자립지원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해 보 호종료 5년 이내 사후관리,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보호 기간 연장	아동의 의사에 따라 별도의 사유가 없어도 만 24세까지 보호 기간 연장 가능(2022. 6. 22. 시행)

출처: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통합적 자립지원 방안 연구”, 이상정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69.

3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 현황

가. 아동보호전담요원 업무 현황

설문조사에 참여(217개 시군구에 1인 참여)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평균 아동보호 업무 경력은 33.5개월(약 2.8년)이었으며(이상정 외, 2024, p. 233), 사회복지 분야 경력은 평균 95.3개월(약 7.9년)이었다(이상정 외, 2024, p. 234). 그러나 2명 중 1명 이상(53.9%)이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근무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정 외, 2024, p. 224).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모니터링 또는 사후관리하는 보호아동 수는 월평균 73.2명으로, 주 35시간 미만 시간선택제(84.6명)가 가장 많았는데(이상정 외, 2024, p. 237), 시간선택제 임기제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급여는 공무원보다 100만 원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정 외, 2024, p. 313).

또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소속 부서에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53%에 불과해 타 법상 관할 시설로 전원 시 사후관리를 위한 연계, 협력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정 외, 2024, p. 228).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주무 부처가 다르고, 행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도 별도로서 주요 자인 유사 연령, 특성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이 받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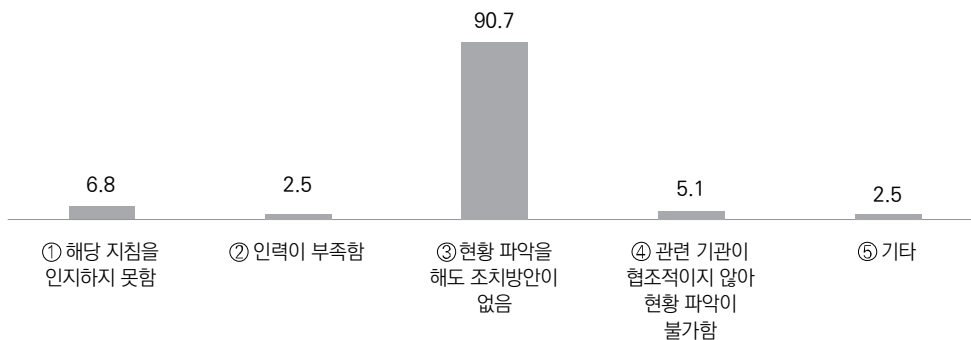
서비스에 격차가 있고, 사각지대도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나.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 현황

만 18세 이전에 중간퇴소하는 아동은 시군구별로 연간 약 28명(월평균 2.3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원가정 복귀 아동 약 14명(월평균 1.2명), 전원 약 6명(월평균 0.5명)으로 원가정 복귀 아동이 약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간퇴소 아동 중 15세 이상은 연간 약 21명(월평균 1.8명), 이 중 타 부처 관할 시설로 전원 조치된 아동은 33개 시군구에서 약 14명(월평균 1.3명)으로 파악되었다. 즉 시군구당 연간 6명의 14세 이하 아동, 그리고 전원 조치 아동보다 더 많은 원가정 복귀 아동(연간 약 7명)이 조기종료 자립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이상정 외,

[그림 2] 연락두절 아동 미파악 이유(복수응답)

(단위: %)



출처: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통합적 자립지원 방안 연구", 이상정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63. 수정.

2024, pp. 241~245).

전국 시군구의 아동보호전담요원 대상 조사 결과를 보면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18세 이전에 가정 외 보호체계를 이탈하여 1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아동의 현황을 최소 연 2회 이상 파악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파악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45.6%,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 비율은 54.4%였다. 연락 두절 아동에 대해 연 2회 이상 현황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11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사유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현황 파악을 해도 조치 방안이 없다’는 응답이 90.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 ‘해당 지침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6.8%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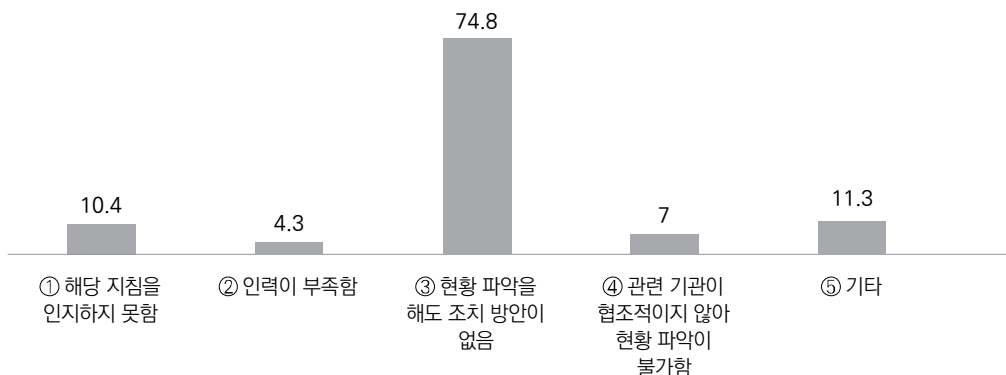
원가정 복귀가 아니라 타 시설 전원으로 만 15세

이후에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모니터링)를 수행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47.0%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53.0%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보호조치 조기 종료 전원 아동에 대해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힌 102개 지역에 대해 사후관리 기간과 빈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후관리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가 64.8%로 가장 많았다. 5년이 30.5%, 2년 이하 2%로 대부분이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관리 빈도는 ‘6개월에 1번’이라는 응답이 15.7%를 차지했고, ‘1년에 4회’ 응답이 14.7%, ‘1년에 1회’ 응답이 13.7%로 나타나며 뒤를 이었다.

보호조치 조기 종료 전원 아동에 대해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115개 지역을 대

[그림 3] 타 시설 전원 아동 사후관리 미수행 이유(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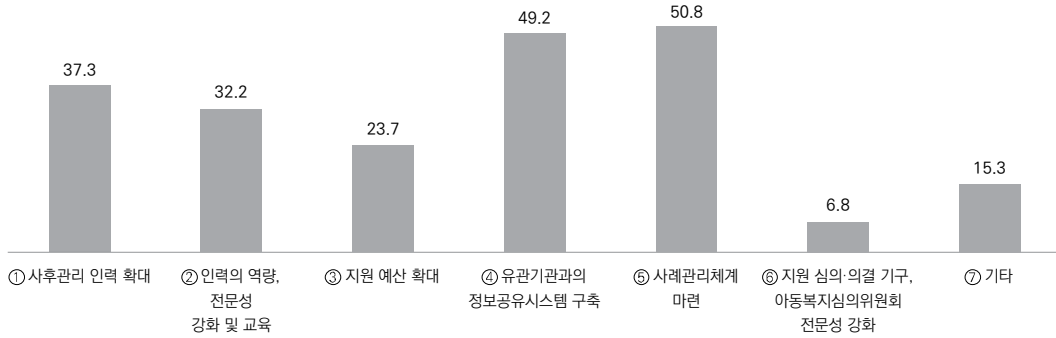
(단위: %)



출처: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통합적 자립지원 방안 연구”, 이상정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66. 수정.

[그림 4] 중간퇴소 자립지원 체계 개선 필요 정책(복수응답)

(단위: %)



출처: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통합적 자립지원 방안 연구”, 이상정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66. 수정.

상으로 해당 사유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현황 파악을 해도 조치 방안이 없다’는 응답이 74.8%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기타’ 응답이 11.3%, ‘해당 지침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10.4%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관련 기관의 비협조로 파악이 어렵다(7.0%)’, ‘인력 부족(4.3%)’의 응답이 있었다.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로 하는 우선 정책 방안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이 49.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협력 가능한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사례관리 체계 마련(50.8%)’, ‘인력의 역량,

전문성 강화 및 교육(32.2%)’에 대한 의견도 다수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다.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 경험2)

1) 자립지원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

아동·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관련 업무 종사자들은 보호대상 아동의 원가정 복귀나 전원 등의 중간퇴소 조치 상황과 사유를 고려했을 때,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이 자립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 했다. 원가정 복귀 아동이나 청소년은 시설 부적응, 혹은 부모의 요구 등으로 원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원가정으로 복귀하여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가정 복귀 아동·청소년을 자립지

2) 전국 시군구에 근무 중인 아동보호전담요원, 여성가족부 산하 시설에 근무 중인 종사자, 법무부 산하 시설에 근무 중인 종사자 총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총 6명 FGI를 진행하였다.

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 경험을 공유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가정에서의 돌봄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가족 복귀 아동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가정 복귀 이후 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적응 문제 등으로 중도 퇴소한 아동들이 ‘가정이 시설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원가정에 복귀하였으나, 부모와 아동을 둘러싼 가족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오히려 아동 부재 기간 동안 부모가 돌봄 책임에서 벗어난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아동 양육에 대한 의지와 역량이 약화되는 사례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약 8명의 중간퇴소 아동 사례를 점검한 결과 학교 생활이나 가정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하였다.

또한 18세 이전의 중간퇴소 중 전원은 많은 사례가 통고³⁾ 처분에 의한 것으로, 처분 후에 원 시설에서 받아주지 않아 청소년자립생활관 등으로 입소하게 되고, 청소년쉼터 등 타 법상의 시설로 전원이 이루어져도 부적응으로 인해 여러 시설을 표류하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 시설이 폐쇄되면서 친인척에게 인계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사례 또한 조기 종료 아동으로 자립지원에서 배제되어 왔다.

2) 미흡한 중간퇴소 아동·청소년 사후관리 체계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과 관련하여 종사자들은 사후관리 체계의 미흡, 그에 따른 사후관리의 어려움, 자립준비 지원의 공백, 법적·제도적 지원 기준에 따른 지원의 한계와 사각지대를 주요하게 지적하였다. 우선 사후관리 체계의 미흡과 관련해서는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 관리의 일관성 부족으로 지원이 누락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시설 종사자는 아동의 시설 이용 이력이 정보시스템에 온전히 기록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과 그룹홈을 거쳐 쉼터에 입소한 아동의 경우 실제 시스템에는 쉼터 이력만 남아 있고 그룹홈 이용 이력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타 법상의 여러 기관이나 시설을 이동하는 아동의 경우 전담 인력이 개별적으로 추적 관리하지 않으면 보호 이력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특히 정보 공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청소년 안전망 시스템도 불안정한 가운데, 권한이 없는 연 1회의 사후관리로는 중간퇴소 아동의 상황을 충분히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실제 현장에서는 “연 1회, 5년간 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아동이 시설을 옮겨 다니는 상황을 매번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 지침대로 연 1회 점검을 진행하더

3)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대한민국 법원, 2025.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38M04>).

라도 시설 측은 아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담당자가 직접 아동의 생활을 면밀히 확인할 권한도 없다. 따라서 점검은 주로 전화 연락을 통해 아동의 존재 여부만 간단히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가 제기되었다. 또한 원가정 복귀 및 중간퇴소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으로 책임 담당자 명확화, 사후관리 기간 및 횟수의 확대와 같은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사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주무 부처가 다르고, 행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가 별도로 구성돼 수요자인 유사 연령, 특성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의 서비스 격차,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장 종사자 입장에서는 분리된 체계에서 정보 공유 시스템조차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전원 조치된 중간퇴소 아동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 사후관리하여 지원하기 어렵다. 또한 아동 입장에서는 자신이 생활한 시설이 어느 부처 관할인지 모른 채 임의적인 보호조치에 따라 보호 중 또는 퇴소 후의 서비스가 달라진다.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 어떠한 시설에서 얼마나 거주했는지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4 나가며

아동복지법 개정과 관련 정책 마련을 통해 15세 이상의 연령으로 조기 보호종료하여 타 법상의 시설로 전원한 아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자립지원

의 사각지대도 부분적으로 해소되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전히 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정부 대책에 의해 원천적으로 배제된 15세 미만, 원가정에 복귀한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을 조기 종료 자립준비청년으로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중간퇴소 연령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

15세 미만, 원가정 복귀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지침을 철회하여 연령 제한 없이 중간퇴소한 아동·청소년·청년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의 연령에 상관없이 원가정 복귀 및 전원 조치 등이 이루어진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령 중간퇴소한 아동·청소년에 대해 1년 동안 집중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실시 후 재보호 또는 가정 내 사례관리, 종료하는 판단 절차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사례관리 수행과 함께 15세에 개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18세에 도달할 때까지 자립준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사례관리는 보호 및 자립 서비스와 연속성, 접근성 측면에서 시군구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현재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부족, 열악한 근무 여건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내 가용한 사례관리기관인 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

문기관 등에 이관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정기적인 모니터링 책임은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사례관리 기간 동안에도 아동과 가정의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사례관리를 중단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정기적(예: 연 1회)으로 필요하다.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어 18세에 도달하는 경우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의 자립서비스 제공이 있어야 한다. 원가정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자립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18세에 도달하여 자립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경제, 주거, 교육, 맞춤형 사례관리 등 개별 상황에 따라 자립지원 주체 및 서비스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촘촘한 사후관리를 위한 통합적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는 보건복지부 관할 아동보호 체계 내에서도 18세 미만에 조기 종료한 아동의 통합적인 현황과 사유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자립지원전담기관, 시군구 아동보호팀(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아동보호 업무와 관련된 시스템이 개별화되어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보호 체계, 법무부의 소년 보호 체계는 별도의 체계로서 정보 공유가 더욱 어렵다. 타 부처 관할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생활관 등의 시설로 중간퇴소 아동이 전원하는 경우 정

보관리 시스템이 없으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해당 아동을 사후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초기 전원 시설에서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거주할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현재의 지침상 연 1회의 사후관리 수준으로는 연락두절을 예방하기 어렵다.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은 당사자가 나타나서 신청하지 않는 한 주어진 자립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아동보호전담요원도 중간퇴소 아동·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우선 정책 개선 방안으로 ‘유관기관과의 정보 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의 효율적 사후관리와 중간퇴소 아동·청소년의 연락두절 예방을 위해 부처 내, 부처 간 통합적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개인 보호 및 지원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민간 및 공공 영역의 기관 간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 청소년의 개별 정보 및 서비스 누락이 해소되고 있는데, 청소년 안전망 시스템을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관할 시설 및 종사자도 활용, 권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의 지원 정보가 자동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 확장을 장기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방안에서도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핵심 인력이다. 현재 분절된 체계하에서 공통의 업무 지침과 정보관리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중심이 되어 중간퇴소한 아동·청소년을 18세까지 체계

적으로 사후관리하고, 누락 없이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인력 확대와 처우 개선 없이 이러한 방안들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2022년부터 전국적으로 715명의 아동보호전담요

원이 배치되었다는 발표와 달리(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 p. 3), 2024년 11월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배치된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총 246명으로 확인된다(아동권리보장원,

[표 5] 지자체별 보호아동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현황

(단위: 명)

구분	보호아동 수							자립 준비 청년 ³⁾	중간 퇴소 자립 준비 청년 ⁴⁾	아동보호 전담요원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아동 일시 보호 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 보호 치료 시설	위탁 가정	합계 ²⁾			인력 수 ⁵⁾	1인당 아동 수 ⁶⁾
서울	1,684	316	50	-	130	782	2,962	1,234	-	27	155.4
부산	758	150	10	-	15	457	1,390	787	-	17	128.1
대구	535	51	15	-	53	270	924	340	-	9	140.4
인천	476	102	30	-	-	437	1,045	412	-	11	132.5
광주	406	176	35	-	-	317	934	356	-	6	215.0
대전	312	83	-	-	83	212	690	275	-	6	160.8
울산	113	40	2	-	-	237	392	122	-	6	85.7
세종	18	-	-	-	-	50	68	12	-	1	80.0
경기	935	816	49	-	40	1,784	3,624	1,594	-	32	163.1
강원	238	80	16	-	-	762	1,096	680	-	19	93.5
충북	439	119	-	-	36	407	1,001	416	-	12	118.1
충남	549	157	-	-	-	644	1,350	464	-	16	113.4
전북	490	200	3	-	44	614	1,351	616	-	15	131.1
전남	852	171	5	-	13	748	1,789	990	-	23	120.8
경북	686	48	4	-	-	723	1,461	683	-	24	89.3
경남	727	135	-	-	21	669	1,552	789	-	19	123.2
제주	221	25	4	-	-	217	467	200	-	3	222.3
전체	9,439	2,669	223	909	435	9,330	23,005	9,970	243	246	136.1

주: 1) 해당 시설이 없거나 현황 파악이 어려운 경우 '-' 표시하였음.

2) 2022년 기준 보건복지부 관할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수의 단순 합산 수치임.

3) 2023년 기준 현황임.

4) 2021년 아동자립지원 통계 현황 보고서 내의 중간보호 종료 퇴소 아동 현황 기준임.

5) 2024년 11월 기준 배치 현황임.

6) 전체 결과(136.1명) 외 17개 시·도의 인력 1인당 아동 수는 현황 자료가 없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을 제외한 결과임.

출처: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통합적 자립지원 방안 연구", 이상정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14. 수정.

n.d.).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아동 2만 3005명, 중간퇴소 아동·청소년 243명,⁴⁾ 자립준비청년 9970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책임이 있다. 1인 기준 약 136명을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⁵⁾

시군구 단위에서 위기 아동 가구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드림스타트의 통합사례관리사는 1인당 40~70명의 아동을 담당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이 과다한 지역이더라도 최대 80명 이하로 담당 기준을 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 p. 50). 따라서 아동 인구 감소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청소년, 자립준비청년의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드림스타트 대상자보다 위기가도가 높은 아동·청소년을 모니터링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 1인당 136명은 과도하다. 드림스타트의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최소한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圖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n.d.). **아동복지법 제38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
- 보건복지부. (2023). **2023 아동복지시설 현황**.
- 보건복지부. (2024). **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월 50만원 지원 받는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5672>
- 보건복지부. (2024). **2024 아동분야 사업안내(2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act=view&list_no=1480171&tag=&nPage=1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1a). **2019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 보고서**. <https://www.ncrc.or.kr/ncrc/na/ntt/selectNttInfo.do?mi=1469&bbsId=1127&nttSn=2033&cataGori=da09&tabName=all>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1b). **2020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 보고서**. <https://www.ncrc.or.kr/ncrc/na/ntt/selectNttInfo.do?mi=1469&bbsId=1127&nttSn=2904&cataGori=da09&tabName=all>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2021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 보고서**. <https://www.ncrc.or.kr/ncrc/na/ntt/selectNttInfo.do?mi=1469&bbsId=1127&nttSn=4135&cataGori=da09&tabName=all>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3a). **2020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https://www.ncrc.or.kr/ncrc/na/ntt/selectNttInfo.do?mi=1469&bbsId=1127&nttSn=5585&cataGori=da05&tabName=all>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3b).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https://www.ncrc.or.kr/ncrc/na/ntt/selectNttInfo.do?mi=1469&bbsId=1127&nttSn=5585&cataGori=da05&tab>

4) 현재 기준 15세 이상의 중간퇴소 아동은 18세에 도달할 때까지 사후관리하여야 하므로 매년 누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43명의 약 3배 수준으로 예상된다.

5) 자료별 기준 연도와 출처가 상이하다. 추정치로 정확한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Name=all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tag=&act=view&list_no=372797

아동권리보장원. (2024). **2023년 자립준비청년 현황**.

<https://www.ncrc.or.kr/ncrc/na/ntt/selectNttInfo.do?mi=1469&nttSn=7195>

아동권리보장원. (n.d.). **아동복지기관 현황-지자체 현황**.

<https://www.ncrc.or.kr/ncrc/cs/cnter/selectCnterList2.do?mi=1327>

이상정, 이주연, 주보혜, 김무현, 백혜정, 주하나. (2024).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통합적 자립지원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자소송포털. (n.d.). **통고제도**.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38M04>

통계청. (2024). **일반아동현황**.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3053

Integrated Policy Support for Early Care Leavers Transitioning to Adulthood

Lee, Sang Ju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Child Welfare Act amended in August 2023 and its implementation in February 2024 laid the groundwork for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to support individuals whose out-of-home protection has ended, or who have been discharged from an applicable facility before turning 18, and who are deem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o need independent living support.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support for early care leavers on the cusp of transitioning into independent living. The findings suggest that gaps in support coverage remain and silos between involved ministries and agencies persist, hindering the delivery of necessary follow-up services. As ways to address these difficulties, I suggest easing the age criteria, extending support to children returning to their original families, developing an integrated, inter-ministerial information system, systematizing follow-up services, and expanding the dedicated child protection workforce.